

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

2022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「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. 4.
연 천 군 수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: 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
- 나. 사업내용: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굴착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
- 다. 사업비: 2,000만원
- 라. 보급대수: 1대
 - *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,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
- 마. 지원금액: 한 대당 최대 2,000만원/대
- 사. 접수기간: 2022. 4. 19. 0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아. 선정방법: 차량 **출고·등록순**으로 대상자 결정
- 자. 보급차종: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굴착기
 - 1) 충전된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한 전기굴착기
 - 2) 「건설기계관리법」,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」,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·신고,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전기굴착기

제조 수입사	차량명	지원금액
호룡	3.5톤 전기미니굴착기	2,000만원
호룡	1.9톤 iX17e	1,800만원
호룡	1톤 농용전기굴착기	1,200만원
이스쿠스	1톤 DaVinci10	800만원
에브리코리아	1톤 TP10-E	200만원

*향후 추가되는 차량 및 지원 차종, 금액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포탈(ev.or.kr)에 게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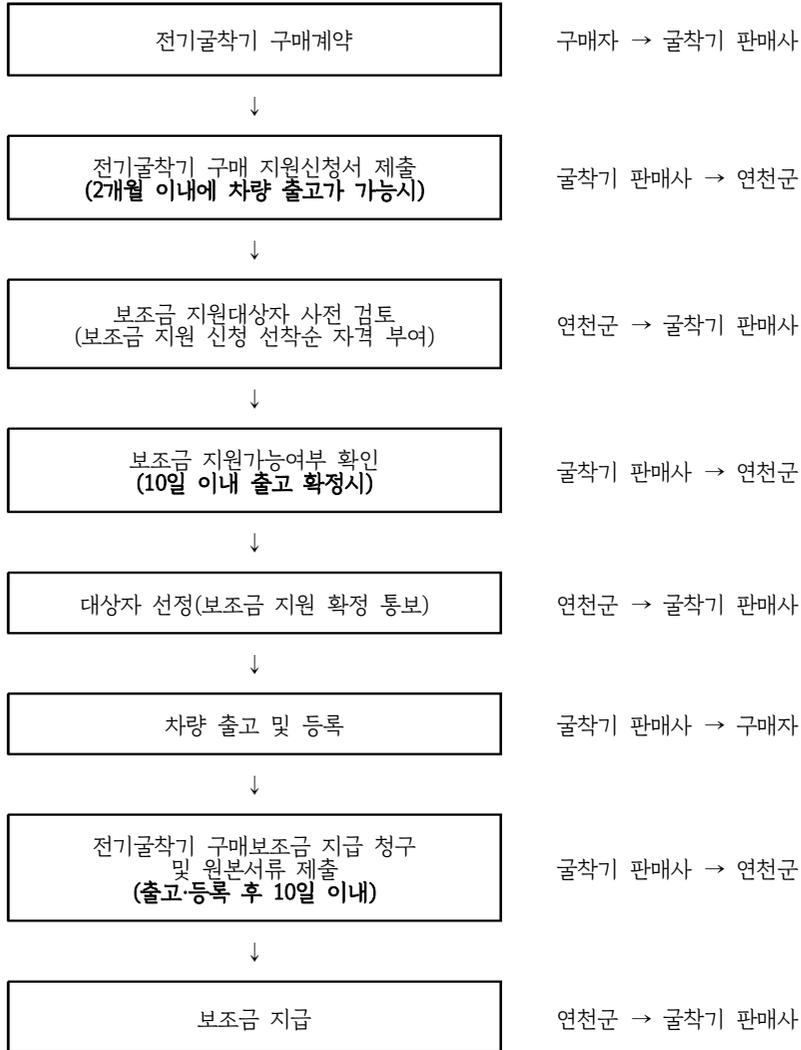
2.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

- 가. 선정대상: **신청일 전일까지** 신규 구매하거나 신규구매, 신규 등록·신고할 경우
 - ① 연천군에 **3개월(90일) 이상** 연속으로 주소를 둔 **만 18세**(굴착기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 이상 개인
 - ▶ **주민등록등본, 초본**으로 주소지 및 거주기간 확인
*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(공동명의자 포함), **최근 주소변동이력 포함**
 - ▶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여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환수대상
 - ② 연천군에 **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, 굴착기 대여사업소 등)**이 위치한 개인사업자, 법인 및 기업, 단체
 - ▶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
 - ▶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연천군민에 한하여 지원 가능
 - ③ 연천군 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(중앙행정기관 제외)
 - *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임.
- 나. 신청자격(필수요건)
 - 1) 구매신청서 작성 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
 - 2)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,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,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연천군이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
 - 3)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
* **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시 대상자선정이 취소됨.**
 - 4) 차량등록 시 건설기계등록증, 등록원부에 **사용본거지를 연천군으로 등록**
*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연천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

다. 보조금 제외대상

- 1) 전기굴착기 제조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
- 2) 연구기관이 시험·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

3. 지원절차 요약도



4. 전기굴착기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

가. 신청방법

신청인	판매사
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 (업체별 지정 판매점)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	전기굴착기 출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, 신청서류 전자사본(스캔파일)을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시스템 (www.ev.or.kr)을 이용하여 접수

나. 제출서류 *반드시 원본서류 제출

- 1) (공통)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,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, 차량구매계약서(출고예정일포함),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,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급 청구서, 첨부사용 서약서
- 2) (개인) 주민등록초본, 등본(최근주소변동내역 및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, 1개월 이내 발급)
*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(공동명의로, 세대구성원 포함)
- 3) (법인, 기업체, 개인사업자 등)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
*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시 굴착기 제조·판매사에서 연천군으로 우편* 또는 방문하여 원본서류 제출 (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사본 서류에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)
*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220 환경보호과

다.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: 신청기간 내 차량 **출고·등록순**

- 1)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ev.or.kr)을 통하여 제출된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신청서를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“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”
- 2) 전기굴착기 판매사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ev.or.kr)을 통하여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“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”요청하여 연천군으로부터 “대상자선정”를 받은 후 출고
* 서류검토 등의 과정에서 결격사유(체납 등) 발생 시 자격부여 지연 및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3) 판매사는 차량 출고·등록 후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지급 요청서(서식2) 제출

5. 유의사항

- 가. 개인, 법인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(중앙행정기관 제외)이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원 대상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해당
- 나. 전기굴착기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굴착기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가족)에 한해서만 공동명의 등록 가능

***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, 지인,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**

- 다. 전기굴착기 신청자가 굴착기 제조·수입사와 계약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***재접수 불가**
- 라.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굴착기 구매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**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 준수**해야함
 - 1)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, 보조금 반환 의무도 포함
 - 2)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연천군의 사전 승인 필요
 - 3) 상세 사항은 「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참조

<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(%) >

전기굴착기 운행기간	3개월 미 만	3개월 이상 6 개월 미만	6개월 이상 9 개월 미만	9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	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	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	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	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
환수율	70%	65%	60%	55%	50%	40%	30%	20%

- 마.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(다만, 지자체 승인 시 변경 가능)
- 바.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
- 사.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(국비 +지방비)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,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

자. 기타문의 사항

- 1)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경부 「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 및 연천군 결정에 따름
- 2) 기타문의 : 환경부 보조금 지원 관련 통합 콜센터 ☎ 1661-0970
연천군 환경보호과 ☎ 031-839-2255
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☎ 031-8008-3546

